

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605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04. 03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04. 03.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23. 04. 12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기결

2. 개정이유

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개정(2022. 12. 27.)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여부와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등 심의·의결 기능을 신설하고자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전담부서의 지정(안 제1조 ~ 안 제2조)

나.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(안 제3조)

다.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4조)

- 적극행정 공무원이 법률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적극행정위원회 심의·의결기능 신설

라.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안 제6조)

마.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안 제8조)

바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~ 안 제10조)

-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해촉 등에 대한 실효성 확보

사.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 ~ 안 제14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법」제75조의2

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

- 1) 기획예산담당관(법무통계담당): 규제심사
- 2)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3-274호
가) 예고기간: 2023. 02. 20. ~ 2023. 03. 11.(20일간)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- 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첨부

5. 본문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가. 조례 제정의 취지(필요성)

- 적극행정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적극행정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적극행정 수행에 따른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 내용 검토

-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(안 제2조)
 -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기 위해 총괄부서를 전담 부서로 지정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함.
-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(안 제3조)
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5조의2제1항에서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,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,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토록 규정함.

-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4조)
 -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, 공무원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해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적극행정위원회를 두도록 함.
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.
- 위원회 구성에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, 제6조)
 -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함.
 -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-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 -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가능
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 -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1조의2에 따라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 - 위원회 출석 또는 안건 검토한 위촉위원에게 「고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함.
-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 -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.
-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.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(2021.12. 9.시행)과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개정(2022.12.27.시행)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,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·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.

- 국정과제 13.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체계 구축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고,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지적한 바 있음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에도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3. 4. 12. 원안가결 함.